

부산고등법원 2023. 7. 13 선고 2022나571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현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3. 6. 15.

판 결 선 고 2023. 7. 13.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0. 27. 선고 2020가합1126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주식회사 C[법인등록번호: D, 본점소재지: 부산 사상구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한 2020. 9. 8.자 양도계약은 144,237,704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44,237,7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들까지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채무자인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①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144,237,70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② 피고가 원고에게 144,237,7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1) 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제1심이 ‘C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C의 사해행위 및 C과 피고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러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종훈, 판사 최희영, 판사 추경준

별지

채권의 표시

1. 채무자 주식회사 C[법인등록번호: D, 본점소재지: 부산 사상구 E]이 제3채무자 소외 주식회사 F[주소: 경남 김해시 AA, 대표이사 AB]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 257,324,000원.
2. 채무자 주식회사 C[법인등록번호: D, 본점소재지: 부산 사상구 E]이 제3채무자 소외 G 주식회사[주소: 경남 김해시 AC, 대표이사 AD]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 30,641,000원.
3. 채무자 주식회사 C[법인등록번호: D, 본점소재지: 부산 사상구 E]이 제3채무자 소외 H[주소: 대구 달성군 AE, 대표이사 AF]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 159,240,000원.
4. 채무자 주식회사 C[법인등록번호: D, 본점소재지: 부산 사상구 E]이 제3채무자 소외 I[주소: 경남 양산시 AG, 대표이사 AH]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 216,000,000원. 끝.

1) 사해행위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 채권양수인인 피고가 I, H, F, G로부터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대상 채권이 소멸하여 그 채권을 다시 양도받는 방법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범위는 피보전채권액과 수익자인 피고가 취득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44,237,7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되어야 한다.